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288

발의연월일: 2024. 11. 6.

발 의 자 : 김 윤·장종태·조인철

이재강・조 국・모경종

김성환 · 김남근 · 오세희

박희승 · 김선민 · 정동영

김남희 • 전종덕 • 문진석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의료인, 약사 또는 한약사가 방송에 출연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가 특정 제품의 광고에 이용되는 행태가 빈발하 고 있음. 예를 들어, 의료인, 약사 또는 한약사가 교양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식품의 효능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고, 곧이어 해당 식품의 광고가 편성되는 경우가 있음.

이는 국민보건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나, 현행법에서는 의약품등에 대해서만 과장광고를 금지 하고 있으며, 의약품등에 대한 광고 외에는 특별히 이러한 행위를 규제 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.

이에 약사 또는 한약사가 방송 등을 통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 보를 제공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보건 수준을 향상하고 의료인 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68조의13 신설 등).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장제6절의 제목 중 "안전관리원"을 "안전관리원 등"으로 한다.

제6장제6절에 제68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8조의13(거짓 정보 제공 금지) ① 약사 및 한약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(식품의 효능에 관한 거짓 정보를 포함한다)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1. 「방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
- 2.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·제2호에 따른 신문 • 인터넷신문
- 3. 「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
- 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[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(Application)을 포함한다]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및 한약사가 제1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기준, 방법 및 협조의 내용, 절차 등

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79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68조의13을 위반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
제6절 한국의약품 <u>안전관리원</u>	제6절 한국의약품<u>안전관리원</u> 등	
<u><신 설></u>	제68조의13(거짓 정보 제공 금지)	
	① 약사 및 한약사는 다음 각	
	호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	
	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(식	
	품의 효능에 관한 거짓 정보를	
	포함한다)를 제공하여서는 아	
	<u>니 된다.</u>	
	1. 「방송법」 제2조제1호에 따	
	<u>른 방송</u>	
	2.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	
	률」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	
	<u>른 신문·인터넷신문</u>	
	3. 「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	
	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	
	에 따른 정기간행물	
	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	
	매체[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	
	<u>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(Appli</u>	
	cation)을 포함한다]	
	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및	
	한약사가 제1항을 준수하는지	
	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여야	

소 등) ①・② (생 략)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 는 한약사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.

1. • 2. (생략) <u><신 설></u>

④ ~ ⑥ (생 략)

한I	<u> 구.</u>	0]	경우	보건복건	시부장관
<u>은</u>	관	-계기	기관에	협조를	요청할
<u>수</u>	있	<u>다.</u>			

③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기준, 방법 및 협조의 내용, 절 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.

제79조(약사・한약사 면허의 취 제79조(약사・한약사 면허의 취 소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3

- 1. · 2. (현행과 같음)
- 3. 제68조의13을 위반하여 건강 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 공한 경우
- ④ ~ ⑥ (현행과 같음)